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215288(본소), 2022가단215295(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청구]

---

##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80678(본소), 2023나8068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215288 판결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은, 이선희, 최지연

변론종결 2023. 6. 9.

판결선고 2023. 7. 7.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4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9.경 원고와,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10. 초경부터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관, 화장실, 테라스, 거실 벽 등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20. 10. 말경 원고에게 공사에 관한 자재 내역서, 견적서 등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교부하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누수 수리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431,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입구 출입문 천장 누수 수리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 수리공사대금 2,4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누수 수리공사계약이나 그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성공보수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및 가.항 기재 누수 수리공사를 마치면 원고의 노력에 대한 사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인 1,2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누수 수리공사 성공보수비로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성공보수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공보수비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각 공사 부분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것이고 공사 종료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고 적어도 3,1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